

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농지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46조, 제47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원회의 설치 및 정수) 위원회는 시(동지역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와 면에 두되 그 명칭과 위원정수는 별표1과 같다.

제3조(위원회의 관할 구역) 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시, 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.

제4조 (위원의 추천 및 위촉) ①각 이·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회위원의 추천을 요청 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·통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영 제63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경우는 이·동장 또는 리·통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면·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면·동장은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시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면·동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·통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제5조 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 ①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나 그 이유를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 절차에서 진술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2.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가 있는 경우
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.

④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6조 (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)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, 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 (위원회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.

②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, 회의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8조 (수당 등)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농지관리위원회 명칭 및 관리위원 정수

가. 동지역

- 명 칭 :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
- 위원정수

구 분	계	시 장	농업인대표위원 (행정동)	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	비 고
급 암	12	1	6	5	

주 : 농지가 없는 이·통등을 제외한 행정리·동수가 30인을 초과하는 시·면의 경우는 시·면장이 농지면적을 감안하여 2인 이상의 인접한 행정리·동을 통합하여 1인의 위원을 선출토록 한다.

나. 먼지역

구분 \ 명칭	계	면 장	농업인 대표위원	농업관련기 관추천위원	비 고
계	36	2	24	10	
두 마	24	1	18	5	
남 선	12	1	6	5	

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서

1. 성 명		2. 주민등록번호	
3. 주 소			

위 사람을 농지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면·동 리를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면·동장 (인)

계 룡 시 장 귀하

첨부서류 : 후보자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 부

[별지 제2호서식]

위 축 장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 소 :

위 축 기 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

귀하를 계룡시 ○○○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계 룡 시 장